

## 유의사항

<b>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b>	
한국암웨이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ABO는 전국 암웨이 비즈니스 센터에서 제품대금을 신용카드, 자동이체, 현금(무통장입금), A포인트/Re-cash(미지급 후원수당)등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현장에서 구매하거나 Amway site, 전화 등을 통해 배달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달 주문일 경우 입금(결제)과 배달주문 확인 후 주문 시 신청된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그 외 배달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제품 주문방법은 Amway site(www.amway.co.kr) 및 관련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b>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과 제공시기</b>	
암웨이 비즈니스 센터(ABC)에서 직접 주문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주문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배달주문의 경우, 주문대금의 지불 확인 후 주문을 확정하는 시점부터 통상 1일부터 5일 사이에 주문 시 신청된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참고로 배달 소요일자 계산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주문 제품의 인도에 관한 기타 상세한 정보는 Amway site(www.amway.co.kr) 및 관련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b>상품의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b>	
한국암웨이 "소비자만족 보증제도"와 기타 "품질보증서"에 따라 한국암웨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보호와 품질보증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암웨이 "소비자만족 보증제도"는 한국암웨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에 만족하지 못해 반환한 경우, 제품대금의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소비자 보호제도입니다. 그러나 고의나 자신의 부주의로 손상된 제품에 대해서는 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제품에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품질표시에 관한 내용과 품질보증조건 및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한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 동 제품사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품질보증서가 없을 경우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관련 유사제품의 보상기준에 준해 보상해 드립니다. (* 원 포 원 제품과 일부 제품의 경우 일반 반품 규정이 상이하오니, 제품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b>다단계판매와 관련한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b>	
본 신청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제소 당시 해당 ABO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암웨이가 판매한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암웨이 제품 및 사업과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암웨이 대표전화 1588-0080으로 연락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b>청약의 철회와 그 행사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b>	
<p>소비자는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구매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ABO는 구매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별도의 반품수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ABO의 반품은 한국 암웨이의 반품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해당 ABO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p> <p>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구매하신 제품을 반환해야 하며 한국 암웨이는 상품 반환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상품대금을 환불하며, 신용카드로 상품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당해 신용카드 업자에게 상품대금의 정구를 정지할 것을 요청합니다.</p> <p>*반품금액의 환불시, 기지급 보너스 및 기인정된 핀레벨도 재조정됩니다.</p> <p>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한국 암웨이 공식 온라인 쇼핑몰 www.amway.co.kr 또는 카탈로그 '초이스'를 참조하시거나, 한국 암웨이 고객센터(전화번호: 1588-008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p>	
<b>다단계판매원(ABO)의 금지행위</b>	
<p>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24조 등에 따라 다음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li> <li>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li> <li>3)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li> <li>4)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li> <li>5)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li> <li>6)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li> <li>7)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li> <li>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li> <li>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2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li> <li>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li> <li>12)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li> <li>13)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li> <li>1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li> <li>15)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연간 총합계 5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li> <li>16)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발행자 등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 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li> <li>17)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li> <li>18)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li> <li>19)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li> <li>20) 다른 다단계 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인을 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li> </ol>

## 철회요청서

성명/회원번호	/	구매장소	
휴대폰번호		철회사유	
상품 구매일자	년 월 일	철회 요청일	년 월 일

### 구매품목 / 금액


본 철회 요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회원번호, 휴대폰 번호, 구매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